

노동자가 항소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

안전보건법 위반을 주장하는 인용문의 미결항고를 가진 고용주가 고용한 직원 또는 고용인의 권한 있는 대표자는 항소위원회에 대해 소송 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의 규정은 다음 규정을 따릅니다:

§ 354. 당사자 지위.

1. 부는 부가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위원회에 대한 모든 소송 절차의 당사자입니다.
2. 제371절에 따라 발의한 명령 신청에 따라 피해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을 소송 절차의 당사자가 됩니다. 둘 이상의 피해 직원 또는 둘 이상의 공인된 직원 대표가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제350.1절에 따라 각 직원에게 당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직원의 권리는 그 사람의 사망 이유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피해 직원이 사망한 경우, 제371절에 따라 피해 직원의 유족이 당사자로서의 명령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원의 생존자의 우선 순위는 생존한 배우자 또는 생존한 국내 파트너, 생존 문제, 생존한 부양가족 또는 생존 부모입니다.
4. 피해 직원 또는 피해 직원의 공식 대리인은 「노동법」 제149.5절에 따라 사용자 비용 회복 소송 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부가 위반행위 혐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직원 항소를 제기할 때, 위반을 완화할 책임이 있는 고용주는 소송 절차의 당사자입니다.
6. 채무자는 제371절에 따라 명령 신청을 제출하여 소송 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부의 조치로 채무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항소 대상인 고용주는 청문회 시작 전에 언제든지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채무자는 노동법 제149.5절에 따라 고용주의 비용 회수 소송 절차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당사자 명령 신청을 하여 항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인물은 소송 절차의 당사자가 되며 모든 문서 및 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각 당사자는 당사자 지위를 부여한 명령 10영업일 이내에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전에 항소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문서의 사본은 새로운 당사자에게 제출되지 않습니다. 제출은 제355절 (c)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355절 (e)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출 증명은 항소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고: 인용된 법규: 노동법 6603(a) 및 148.7절 참고: 노동법 6603(a) 및 6600, 6319(b)의 148.7절

당사자 지위에 대해 명령 신청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은 새크라멘토의 항소위원회에 연락하여 보류 중인 항소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877) 252-1987 또는 지역 전화 (916) 274-575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